

『희망키움통장II』 특약 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18. 2. 1

2. 개정내용

개정 전	개정 후	비 고
『희망키움통장II』 특약	『희망키움통장II』 특약	
제 1 조 적용범위 (내용생략)	제 1 조 적용범위 (좌동)	‘2018자활사업안내(II)희망·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’ (이하 ‘운영지침’ 이라 함) 변경 내용 반영
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지방자치단체, 중앙자활센터,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민간위탁기관(이하 지방자치단체, 중앙자활센터와 민간위탁기관을 “기관”이라 함) 및 “운영 지침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(이하 “고객”이라 함)을 대상으로 합니다.</u>	제 2 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중앙자활센터 및 “운영 지침”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은행에 가입승인을 통보한 실명의 개인(이하 “고객”이라 함)을 대상으로 합니다.</u>	정부지원금 가입을 지방자체단체에서 중앙자활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가입대상 중 지방자체단체, 민간위탁기관 삭제 (운영지침 27p, 40p)
제 3 조 예금과목 (내용생략)	제 3 조 예금과목 (좌동) (좌동)	
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, <u>기관은 38개월로</u> 합니다.	제 4 조 약정기간 이 예금의 약정기간은 고객은 36개월, <u>중앙자활센터는 60개월로</u> 합니다 (단, <u>중앙자활센터의 약정기간은 개정시행일 이후에 신규 계좌부터 적용함.</u>)	중앙자활센터로 변경 및 중앙자활센터 예금 약정기간 변경 (운영지침 40 p)
제 5 조 최소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고객은 10만원으로 지정하며(추후 변경 불가), <u>기관은 0원 이상</u> 원단위로 신규합니다.	제 5 조 최소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초 가입금액은 고객은 10만원으로 지정하며(추후 변경 불가), <u>중앙자활센터는 0원 이상</u> 원단위로 신규합니다.	(2조 변경 반영)중앙자활센터로 변경
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 고객은 매월 1회, 일정일(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)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(10만원)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. 단, <u>기관은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, 이하 ‘근로소득장려금’이라 함)과 개별지원금을</u>	제 6 조 불입 및 적립방법 고객은 매월 1회, 일정일(전월 23일부터 해당월 22일까지로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)에 한해 최초 가입시 지정한 금액(10만원)만 입금 할 수 있습니다. 단, <u>중앙자활센터는 적립금액 및 적립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근로소득장려금(정부지원금, 이하 ‘근로소득장려금’이라 함)과 개별지</u>	(2조 변경 반영)중앙자활센터로 변경

<p>입금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 7 조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별지원금 지원대상 (내용생략)</p> <p>제 8 조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별지원금 지원금액</p> <p>① <u>민간위탁기관은</u> 고객불입금(월 10만원)이 적립된 월에 “운영 지침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고객이 “운영 지침”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.</p> <p>② <u>지방자치단체는</u> “운영 지침”에 따라 개별지원금을 적립하여 고객이 “운영 지침”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.</p> <p>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 (내용생략)</p> <p>제 10 조 우대금리 (내용생략)</p> <p>제 11 조 해지방법</p> <p>① 고객은 <u>민간위탁기관에</u> 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<u>민간위탁기관이</u> “운영 지침”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<u>민간위탁기관이</u>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.</p> <p>③ <u>지방자치단체가</u> 지급하는 개별지원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.</p> <p>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 (내용생략)</p> <p>제 13 조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별지원금 지원조건</p> <p>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, 근로소득장려금과 개별지원금은 “운영 지침”에 따라 <u>민간위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경우에 한하여</u> 고객에게 지급됩니다.</p>	<p>원금을 입금 할 수 있습니다.</p> <p>제7조 근로소득장려금및 개별지원금 지원대상 (좌동)</p> <p>제 8 조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별지원금 지원금액</p> <p>① <u>중앙자활센터는</u> 고객불입금(월 10만원)이 적립된 월에 “운영 지침”에 따라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여 고객이 “운영 지침”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.</p> <p>② <u>중앙자활센터는</u> “운영 지침”에 따라 개별지원금을 적립하여 고객이 “운영 지침”의 요건 충족 시 일괄 지급합니다.</p> <p>제 9 조 불입 및 적립중지 (좌동)</p> <p>제 10 조 우대금리 (좌동)</p> <p>제 11 조 해지방법</p> <p>① 고객은 ‘<u>운영 지침</u>’에 명시한 기관에 희망키움통장 해지신청을 하고 <u>중앙자활센터가</u> “운영 지침”의 해지 사유에 따라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② <u>중앙자활센터가</u> 지급하는 근로소득장려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.</p> <p>③ <u>중앙자활센터가</u> 지급하는 개별지원금은 은행에 해지 승인 통보 시 고객이 지정한 KEB하나은행 입출금통장계좌로 지급됩니다.</p> <p>제 12 조 이자 지급방법 (좌동)</p> <p>제 13 조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별지원금 지원조건</p> <p>① 이 예금이 해지되는 경우, 근로소득장려금과 개별지원금은 “운영 지침”에 따라 <u>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고, 중앙자활센터가 해지 승인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</u> 고객에게 지급됩니다.</p>	<p>(2조 변경 반영)중앙자활센터로 변경</p> <p>(2조 변경 반영)중앙자활센터로 변경</p> <p>해지신청 기관에 대해 ‘운영 지침’에 명시한 기관으로 문구 수정 (2조 변경 반영) 해지승인 통보에 대해 중앙자활센터로 변경</p> <p>(2조 변경 반영)중앙자활센터로 변경</p> <p>(2조 변경 반영)중앙자활센터로 변경</p> <p>운영지침 지급절차 변경 반영</p>
--	---	---

<p>② 고객은 근로소득장려금과 개별지원금을 “운영 지침”이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증빙자료를 <u>민간위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</u> 근로소득장려금과 개별지원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(내용생략)</p> <p>제 15 조 부가서비스 (내용생략)</p> <p>제 16조 기타 (내용생략)</p>	<p>② 고객은 근로소득장려금과 개별지원금을 “운영 지침”이 명시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증빙자료를 ‘<u>운영지침</u>’에 명시한 <u>기관에</u> 근로소득장려금과 개별지원금 지급 요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</p> <p>제 14 조 양도 및 담보제공의 제한 (좌동)</p> <p>제 15 조 부가서비스 (좌동)</p> <p>제 16조 기타 (좌동)</p>	<p>증빙자료 제출 기관에 대해 ‘운영지침’에 명시한 기관으로 문구 수정</p>
---	--	--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